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청년 4차 모집공고

사회연대경제 현장에서 미래를 경험하다!

미취업 청년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의 참여청년을 모집합니다.

2026년 9월 8일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주관:행정안전부)
- 사업내용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청년(19~39세) 중 미취업청년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19~39세) 중 미취업청년
- 근무기간 : 2026년 10월~ 2027년 2월(5개월) ***약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무내용 : 참여기업 직무내용 참조
 - ①홍보·마케팅·영상·디자인, ②AI기반 데이터 분석·관리, ③상담·교육·복지서비스,
 - ④문화·예술·공연·전시 기획·지원, ⑤에너지·안전·기술진단, ⑥사무행정·회계·경영지원 등

2 모집개요

- 신청기간 : **2026. 9. 14.(월) ~ 9. 20.(일) (*참여희망기업 1~3순위 선택)**
- 모집대상 : 충청남도 내 청년(19~39세) 중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 모집규모 : 충청남도 소재지 사회연대경제기업 50명
- 연 령 : 2026.1.1.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1.2.~2007.1.1. 출생자)
 - *참여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충청남도 거주자(**주민등록 유지 필요**)
 - *수도권 거주 청년 참여 가능**
- 모집절차 : 참여청년 접수 종료 후 참여자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운영기관 주관하에 참여기업이 참여청년을 면접하여 최종 선발함

참여제한

- (참여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 불가
 - ❶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 단,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참여제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참여 가능(증빙제출 필요)
 -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사실증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소득금액증명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❷ 타 부처 또는 지방정부의 취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자
 - ❸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해당 참여기업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❹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참여기업 사업주(대표자)인 자
 - ❺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일경험 사업에 참여한 자
 - ❻ 단순 변심으로 청년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여 2회 이상 중도이탈한 자
 - 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참여제한 사유는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 사업 참여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참여 중단할 수 있음**

- 근로조건
 - (근로시간) 주 5일(주 40시간),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12:00~13:00(1시간)
 - (연장근로시간) 주 12시간 이내(참여기업-참여청년 합의 필요)
 -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상세한 내용은 7. 기타 참조)
- 임금
 - (시급) 11,188원
 - ※ 월 209시간 개근시 2,340,000원(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세전)
 -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의 50/100 가산 지급
 - (급여공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그 밖

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공제 항목

- 참여청년이 월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 해당 월의 재직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청년이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미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을 공제
- 결근 등으로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 발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

※ 시급 11,188원, 1일 8시간으로 계산, 10원 미만 올림

※ 공가, 연차휴가, 직무교육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임금을 공제하지 아니함

3 신청개요

○ 신청유형

- ① **취업형** 인턴 : 사회연대경제 조직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실무 중심 일경험
- ② **일자리창조형** 인턴 : 신규 직무 아이템 보유 조직 또는 창업지원 조직에서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일경험으로, 참여청년을 팀 단위(2~4명)로 기업과 매칭

○ 신청방법 : 고용24를 통해 온라인 신청 (<https://m.site.naver.com/29ZAK>)

※ 검색경로: 고용24 - 일자리 찾기 - 테마별 - 공공·참여형 -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
키워드 검색: '사회연대경제'

○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서식	필수
1	참여청년 신청서	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2	
3	참여청년 서약서	서식3	

○ 참여기업 및 직무내용 : 참여기업 모집 완료 후 추후 안내

○ 일정안내

- 참여기업+참여청년 면접일 : 2026. 9. 21.(월) ~ 9. 30.(수)
- 참여청년 (예정)출근일 : 10. 1.(목) *시군 약정체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 : 근로계약일로부터 5개월

(*참여기업과 매칭 및 약정 체결 일정에 따라 출근일과 일경험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선발방법

- 심사방법 : 참여자 적격 여부 검토
- 면접대상 알림 : 운영기관은 사업 참여 적격여부 검토 후 모집결과를 기업에 통보
-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이 면접을 진행하며, 참여기업이 선발함
- 면접: 청년은 희망기업 3개사와 면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최대 3배수까지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비 후보를 선발할 수 있음
- 매칭: 참여기업이 심사한 결과를 청년에게 알리고, 참여기업에 합격한 청년이 최종 수락하면 참여청년과 참여기업의 매칭이 완료됨
- ※ 참여청년 선발 이후 선발인원 미달 혹은 중도 탈락자 발생 시 수시 모집 공고 예정

5 직무교육

- 직무교육 : 최종 선발된 참여청년 대상 직무교육 진행(총 20시간)
 - 교육기관이 기획하여 설계한 커리큘럼에 따라 기본·심화과정 이수
 - 총 교육시간의 90%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 되며, 미수료시 참여 불가
 - 커리큘럼 :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설계
 - 교육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예정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참여) 주 1회 이상 청년매니저와 정기면담(대면·유선·온라인 등) 필수 참여
 - 오리엔테이션 및 1차 교육 일정
 - 일정: 2026. 10. 1. 예정
 - 장소: 별도 안내 예정
- (*일정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

○ 교육내용

구분	교육내용	시간	비고
기초	[사회연대경제와 지역혁신의 이해] • 사회연대경제의 철학과 가치 • 충남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탐색 (충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사례 분석)	2	오프라인
	[사회연대경제 지역 탐방]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라운딩 • 지역 사례 탐색 • 입주기업 운영 프로그램 체험	4	
	[사회연대경제와 중간지원조직 비영리 법인 이해] • 비영리 법인(NPO)의 개념 및 목적 사업의 이해 • 비영리 법인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이해] • 사회연대기업의 특징 및 사례 • 사회적기업과 기업가정신	2	
심화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성장모델 이해] • 창업에서 성장까지의 발전 경로 • 사회적 가치와 비즈니스의 균형	2	온라인
	[사회적 가치 마케팅 실전] • 스토리텔링 마케팅 및 실전 오픈마켓 입점/운영 • SNS 및 콘텐츠 기획 • 지역 기반 브랜딩 전략	2	온라인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업무혁신1] • 생성형 AI의 이해 • ChatGPT, Gemini, Claude 활용법 • AI 업무자동화 프로젝트	2	온라인
	[AI 리터러시와 디지털 업무혁신2] • AI 기반 업무자동화 프로세스 • 사회연대경제 디지털 전환	4	오프라인
합계		20	

*교육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자세히 안내 예정

6 문의

- 문의 이메일 : gs@cnse.kr
-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41-456-8128

7 기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선발 등에 관련한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음
- 제출한 증빙서류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 중단,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청년 지원 프로그램

- (프로그램 지원)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과 참여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
 - 청년 밀착형 프로그램 : 참여청년의 원활한 일경험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참여청년에게 고충상담, 상시 상담창구 운영, 사업 안내 등을 지원함
 - 멘토링 프로그램 :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청년과 같은 부서에 있거나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참여기업의 직원을 멘토로 정하여 멘토링을 지원함

□ 법적 지위와 4대보험 가입 의무

- (법적 지위)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 (4대보험) 참여기업은 참여청년에 대해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함

□ 연장근로와 근로조건 변경

-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은 참여청년의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 이내로 함
 - 연장·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며,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합의가 이뤄진 때에만 참여기업의 긴급한 필요가 있고 참여청년과 합의하면 실시 가능
 - 휴일·연장·야간 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참여청년과 합의를 통해 주말 운영 및 시간조정(08:00~19:00 범위) 가능

- 기업과 청년의 합의로 위 운영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급여는 기업이 부담함
- (근로계약 변경) 참여기업은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참여청년에게 교부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 (근로조건 변경 불가)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서 기준이며, 참여청년과 협의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참여청년에게 불리하게 변경 불가
- (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을 경우) 참여청년이 근로를 종료하고 싶으면 퇴사일로부터 10일 전에 참여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함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 사직서 제출 없이 그 만료일로 퇴직)

□ 근태관리

- (출근인정) 천재지변, 유행성 질병·감염병 등 특수상황 발생 시 운영기관이 문서로 인정하면 출근한 것으로 인정 가능
 - 단,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가 사용이라도 전체 일경험 기간의 아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 (*8주 이내: 10%, 8주 초과~12주: 15%, 12주 초과: 20%)
- (결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 결근 예정일 전날까지 참여기업에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승인: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결근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리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함
 - 무단결근: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 처리
- (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일 출근 시간까지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에 바로 그 사유를 알려야 함
(*지각·조퇴·외출 누계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연차유급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

□ 휴일과 휴가

- (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 ① (주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 보장
 - ② (공휴일)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적용
- * 해당 공휴일이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며, 휴무일 또는 비번일과 겹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급 적용

③ (휴일대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다른 근로일로 대체 가능

- 이 경우 참여기업과 참여청년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하며, 휴일대체 사실은 최소 24시간 전에 알려야 함

○ (연차유급휴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 단,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발생
- 연차유급휴가는 반일 또는 1시간 단위(지각·조퇴·외출)로 사용 가능
- * 8시간=1일로 계산, 일경험 기간 내 연차 미사용 시 근무종료 후 연차수당 지급

○ (경조사 휴가) 경조사 유급휴가의 내용과 휴가일수는 아래 표 확인

구분	휴가일수	대상
결혼	5일	본인
	1일	자녀, 형제·자매 결혼
사망	5일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출산	10일	본인 및 배우자

○ (병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에 따른 업무상 재해는 유급 병가, 업무 외 부상·질병인 경우 15일의 무급 병가 부여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 병가 사용 가능, 7일 이상 연속 사용 또는 연간 누계 6일 초과 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제출
- ※ 종일·반일·1시간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8시간을 1일로 산정

○ (특별휴가) 취업시험, 면접, 자격증 시험 응시 시 특별휴가(유급) 부여

- 수험표 등 응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때에만 시험 당일 부여하며, 1개월마다 1일 이내 사용 가능
- ※ 자격증 시험은 합격·불합격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시험만 적용(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미적용)

○ (재해에 따른 휴가) 풍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참여청년 본인이 손해를 입으면 최대 5일의 유급휴가 부여

□ 공가

○ (공가) 법령상 의무 이행 또는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필요한 기간 동안 부여(유급)

공가사유

1.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소집, 동원 또는 훈련에 응하는 경우
2. 공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는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 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6. 천재지변, 교통 차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